



**CDTFA**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 감사(Audits)

---

주의 사항: 이 간행물은 간행물 작성 당시의 유효한 법률 및 해당 규정의 요약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법률 또는 규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간행물의 내용과 법률 또는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결정은 법률에 근거하며 본 간행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조항	페이지
개요	1
감사 목적	2
사전 준비 단계	3
최초 연락	3
일정 예약	3
소멸시효	3
검토 가능한 기록	4
감사관과 논의	5
조사 및 검사	6
감사 결과	8
종결 회의	8
감사 결과 통지	8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8
납부액 선납	9
청구 또는 환급 통지서	10
결정 통지서(청구용)	10
이자 및 과태료	10
환급 통지서	10
추가 이의 제기 절차(간행물 17)	11
추가 정보	12
부록	14
감사 목적 및 검토 대상 기록	14-40

## 개요

본 간행물의 정보는 감사에서 요청해야 하는 사항과 귀사와 감사관을 위해 감사를 더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주의 사항:** 본 간행물에서는 납세자와 수수료 납부자를 총칭하여 납세자로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정 감사는 3년 간격으로 허가증이나 면허 만료 시에 시행되거나 동일한 납세자가 보유한 다른 허가증 또는 면허의 감사와 함께 시행됩니다. 외부 출처로부터 받은 정보의 결과로 감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 수행 시 법률 및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캘리포니아주 조세 및 수수료관리국, CDTFA) 정책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희 감사관은 귀하가 정확한 세금 또는 수수료를 보고했는지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과다 납부 및 과소 납부는 감사 중 평가됩니다.
- 감사 기록은 **규정 1698** 및 **규정 4901**의 조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 CDTFA의 감사 프로그램의 목표는 과소 신고 또는 과다 신고를 초래한 오류를 정정하고, 세금 또는 수수료의 적절한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감사 중 세금 또는 수수료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신고 요건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감사관은 전문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감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많은 경우 감사로 인해 세금이나 수수료 금액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감사 절차는 사업 유형이나 규모, 관련된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이 간행물은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궁금한 사항을 관리하는 세금 또는 수수료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추가 정보** 참조). 감사 일정이 있는 경우 귀사의 계정에 배당된 감사관에게 직접 질문을 해야 합니다. CDTFA는 감사 및 규정 준수 매뉴얼의 정책과 절차를 면밀히 따릅니다. 본 매뉴얼은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내용이지만 귀사가 이해할 수 있으며 감사에 적용되는 감사 절차를 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매뉴얼 모두

[www.cdtfa.ca.gov/taxes-and-fees/staxmanuals.htm](http://www.cdtfa.ca.gov/taxes-and-fees/staxmanuals.htm)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관에게 특정 산업을 위해 작성된 간행물이나 산업별 웹 페이지, 산업 가이드, 세금 및 수수료 가이드를 안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 세금 자문은 서면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추가 정보 참조). CDTFA가 잘못된 자문을 제공할 경우 서면 자문만이 세금, 수수료, 이자 또는 벌금으로부터 귀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판매세 및 사용세 외의 세금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 간행물을 참조할 경우 일부 절차상 소소한 차이가 있거나 다른 주정부 기관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다른 프로그램 목록은 **부록** 참조). CDTFA가 관리하는 기타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dtfa.ca.gov/taxes-and-fees/stfprograms.htm](http://www.cdtfa.ca.gov/taxes-and-fees/stfprograms.htm) 웹 페이지의 **특별세 및 수수료**를 방문하십시오 나열된 프로그램의 링크를 클릭하면 많은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세금 및 수수료 안내도 제공됩니다.

## 감사 목적

감사의 목적은 신고서에 세금이나 수수료를 올바르게 신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부록에서는 감사관이 감사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과 고려 중인 세금 또는 수수료 유형에 따라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유형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세 및 사용세 감사라면 감사관은 귀사가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할 것 입니다.

- 개인 유형 자산(상품) 및 과세 대상 노동, 서비스 매출의 모든 총 수입을 신고했습니까?
- 세금을 내지 않고 타주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사용세 적용 대상인 재판매를 위해 구매한 모든 사업상 장비와 용품의 원가를 신고했습니까?
- 공제액을 적절히 청구했습니까?
- 지방세는 적절히 책정했습니까?
- 특별 과세 구역의 판매 신고 시 올바른 세율을 사용했습니까?
- 개인 유형자산의 판매 및 사용 시 세금을 적절하게 적용했습니까?

감사관의 목표는 최단 시간 내에 이러한 질문에 가능한 한 정확한 답변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사전 준비 단계

### 최초 연락

정책에 따라 사전 통지 없는 감사를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기업에 준비할 시간을 주었을 때 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마감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감사 관련 최초 연락은 일반적으로 전화로 이루어집니다. 전화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감사관이 귀사의 사업장에 서면으로 연락을 하거나 방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연락 시 감사관은 감사 기간(보통 3년)을 통보하고 사업체에서 보관 중인 기록 유형 등 사업 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합니다. 감사관은 감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업 기록이 무엇인지 안내하고 감사를 시작하기에 편리한 날짜와 장소를 물어봅니다.

판매 및 사용세 계정 이외의 세금 및 수수료 계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계정은 별도로 감사를 위해 선택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정의 감사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계정을 함께 감사하면 동일한 기록 중 필요한 일부로 서로 다른 세금 또는 수수료 계정을 감사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CDTFA 계정의 일괄 감사에 관심이 있는 경우 최초 일정을 정하기 전 감사관에게 알려주십시오.

귀사의 회계사 또는 회계 담당자와 같이 승인된 대리인이 감사 과정을 처리하기를 원할 경우, 최초 연락 시 감사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감사관이 귀사의 대리인과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감사 약속을 잡으면 감사 시작 날짜를 확인하는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이 서신에는 [간행물 70, 캘리포니아 납세자의 권리](#) 이해웹사이트 링크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일정 예약

감사관은 감사 시작 날짜와 장소 결정을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2~3주의 준비 시간이 제공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작 날짜를 연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 및 포기:** 감사관은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시효 포기 양식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규정된 3년의 기간 이내에 추가 세금 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이러한 법률상 기간을 연장하는 서류입니다. CDTFA에서 관리하는 대부분의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의 경우 이 포기 기간 동안 환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귀사가 감사 시작일의 유예를 요청하고 대출 또는 환급과 관련된 상황이 있을 경우, 감사관은 **대출 이자 포기**에 서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포기 양식과 관련한 질문이 있을 경우 감사관과 상담하십시오.

CDTFA는 귀사의 사업 장소에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사 회계사의 사무실이나 CDTFA **사무실** 중 한 곳에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귀사 사업 장소에서 감사를 수행할 작업 데스크, 전기 콘센트 및 적절한 조명이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가 CDTFA 사무실에서 수행되는 경우, 감사에 필요한 모든 기록을 CDTFA 사무실에 두고 그 기록에 대한 보관 증빙서를 받아야 합니다. 귀사 사업 장소에서 감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사관은 사업 운영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귀사의 사업 시설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모든 납세자의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단,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고 캘리포니아주 소득세 신고서에 사용세를 신고하기로 선택한 납세자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의 소멸시효는 8년입니다.

다음의 경우 2003년 1월 1일 이전 세금 신고 기간에 대해 납부해야 할 금액에 연장된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05년 세금 감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사기 또는 탈세 의도의 증거가 발견된 경우

2009년 1월 1일부터 해지, 해산 또는 포기된 회사, 합자회사, 유한 합자 회사 또는 유한 책임 회사의 책임자에게 청구서(결손 판정)를 발행할 때 다음 기간 중 하나(둘 중 빠른 날짜)로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1. CDTFA에서 사업체의 종료, 해산 또는 포기에 대한 실제 사실을 파악한 분기 기간 다음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년. 상기 사실은 감사 및 규정 준수 활동 또는 해당 사업체와의 서면 의사 소통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체가 종료, 해산 또는 포기된 분기 기간의 다음 달 말일로 부터 8년. 사업체가 CDTFA 이외의 주 또는 지방 기관에 법인의 종료, 해산 또는 포기 통지를 제출하는 경우라 해도 CDTFA가 그 제출 사실을 실제로 인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 1702.5](#), [책임이 있는 사람의 책임\(Responsible Person Liability\)](#)을 참조하십시오.

## 검토 가능한 기록

감사관이 검토할 수 있는 기록의 유형은 감사 대상 세금 또는 수수료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관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기록의 사례와 해당 기록을 검토하는 동안 결정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한 정보는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귀사가 기밀로 간주하는 기록을 포함하여 모든 기록은 귀사의 세금 또는 수수료 금액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감사관이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소환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CDTFA의 직원이 감사 중에 얻은 기밀 정보를 승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는 직원은 내부 징계 및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됩니다.

### 사업 기록의 보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필수 기록을 더 빨리 파기할 수 있는 명확한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최소 4년 이상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감사 기간에 해당하는 날짜의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는 4년 이상 보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CDTFA와 분쟁이 있는 경우 해당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 또는 다른 청구 절차(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급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문제가 진행되는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POS 시스템에서 4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데이터를 덮어쓰는 경우, 상기 명시된 필수 기간 동안 덮어쓰기 되거나 시스템에서 제거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는 이전 및 유지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에서 [간행물 116](#), [판매 및 사용세 기록](#), [규정 1698](#) 또는 [규정 4901](#)의 사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기록의 일반적인 문제

[부록](#)에 명시된 기록을 분실하거나 모두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현재 보유한 기록을 감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감사관은 이용 가능한 기록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귀사가 누락된 기록을 재구성하거나 감사관이 누락된 정보를 추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공급업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기록 재구성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또한 부적절한 기록 관리로 인해 세금이나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 과실에 따른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CDTFA 감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는 일부 기록을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관 상태에서 제거해야 하는지 여부는 감사관의 필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종종 감사관이 요청할 때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경우 기록을 보관 장소에 남겨 둘 수 있습니다.

### 제3자 소유 데이터

CDTFA는 감사 목적으로 다른 주정부 기관, 기업, 도매업체 및 데이터하우스를 비롯한 다양한 출처에서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 대상 납세자와 공유할 수 없는 제3자 소유의 데이터가 이러한 정보 중 일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산업에서 제3자는 데이터 판매를 목적으로 개인 및 회사의 금융 거래에 기반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독점 데이터"는 CDTFA에서 소유하지 않으며, 제3의 계약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는 구속력 있는 문구로 표시된 데이터입니다. 구독 기반 서비스를 통해 CDTFA에 제공되는 특정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의 경우 저작권 적용 대상일 수 있으며 제3자의 사전 동의 없는 배포는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관이 감사 중 제3자 소유 독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감사 수행 시점에 동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음을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감사관은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곳(즉, 제3의 출처)의 납세자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 감사관과 논의

일반적으로 감사관은 기록 검토를 시작하기 전 사업 운영 및 회계 방식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해당 질문에 가능한 한 완전한 답을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관이 사업 및 회계 기록을 완전히 이해하면 감사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 감독 기반 감사 프로그램

CDTFA의 Managed Audit Program (감독 기반 감사 프로그램 MAP)를 통해 특정 기업은 당사 감사관의 지침과 안내에 따라 일종의 자체 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AP 프로그램은 모든 CDTFA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감독 기반의 감사 요건을 충족하고 CDTFA에서 참여 승인을 받으면, 감독 기반 감사 프로그램 참여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적으로 CDTFA 감사관이 수행하는 많은 감사 작업을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감독 기반 감사를 완료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CDTFA가 관리하는 일부 프로그램에는 법률에 따라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MAP을 완료한 경우 납부할 금액에 대해 기존 *이자율의 절반*을 적용한 이자만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MAP에는 다른 이점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감사 중 감사관은 일반적으로 영업 시간에 사업장에서 기록을 검토합니다. 감독 기반 감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지정된 시간내에 감사를 완료할 경우 *귀사에게 가장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3 감독 기반 감사 프로그램\(Managed Audit Program\)](#)에서 MAP와 관련된 일반적 정보 및 감독 기반 감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선불 계정은 이제 MAP에 참여할 수 있으며, MAP에 참여한 납세자가 CDTFA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익 및 과세법 섹션 6596](#) 및 특정 특별세 및 수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유사한 조항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 및 검사

감사관은 일반적으로 귀사의 기록에 대한 예비 조사로 감사를 시작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 감사관은 어떤 기록이 이용 가능한지 그리고 귀사의 거래를 기록하는 데 사용하는 절차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감사관은 전체 감사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세 감사의 경우 감사관은 다음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판매세 신고서에 신고된 총 판매액에 대해 장부에 기록된 총 판매액.
- 장부에 기록된 총 매출 대비 소득세 신고서에 신고된 총 매출.
- 징수된 세금 대비 신고서에 신고한 세금.
- 재판매 고객에게 재판매한 판매 증빙.

감사관은 또한 세금 납부 없이 구매한 장비 또는 용품의 구매 송장을 확인하거나 최종 원가 가산액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위해 계정이 지정된 후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신고서는 추가 기록으로 간주되어 검토됩니다. 수정 신고서를 기반으로 납부한 금액은 감사에 반영되므로 납부액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매세 및 사용세 외의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에서 검토하는 서류 **유형의 예시를 확인하려면**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 사전 감사

사전 감사 중 표본 검토 또는 실제 검토를 통해 해당 문제가 검사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면 증빙 서류가 있을 경우 사전 감사 중 CDTFA에서 제공한 서면 자문은 'CDTFA 서면 자문'으로 신뢰될 수도 있습니다.



### 보증된 의견 없음(NOW: No Opinion Warranted)

정기 감사 중 검토한 계정에서 NOW(보증된 의견 없음)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이 기록을 간략하게 검토한 결과 추가 검토 보증이 없다고 표시되면 NOW 결과가 발생합니다. NOW의 목적은 기록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을 때 사업자와 감사관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NOW는 감사 보고서가 아닙니다. 감사관이 모든 거래를 조사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귀사가 적절하게 신고하지 못한 거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어떤 사람이 CDTFA의 서면 자문을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거래 또는 활동에 대한 세금 및/또는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은 세금, 수수료, 과태료 또는 이자를 면제 받을 수도 있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NOW 검토의 제한된 범위로 인해 정기 감사 결과 NOW가 발생하였고, 감사관이 감사 관련 문서, 일정 또는 기타 서면 정보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면책 목적상 신뢰 가능한 'CDTFA의 서면 자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NOW에 거래와 관련한 상세한 검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검토 중 준비된 의견, 일정 및/또는 관련 문서를 통해 해당 거래의 세금 또는 수수료가 올바르게 신고되었음이 명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NOW에 CDTFA의 서면 자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OW가 CDTFA 서면 자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결정됩니다.

감사관은 신고서에 세금 또는 수수료를 올바르게 신고하였는지 확인할 뿐 아니라 귀사의 사업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거래 또는 활동에 대한 세금 또는 수수료 적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감사 검토가 시작되기 전 감사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CDTFA의 서면 답변을 받아보시려면 세금 또는 수수료 관련 질문을 CDTFA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DTFA-8 서면으로 확인(Get It in Writing)**을 참조하십시오.

## 현재 감사 중 이전 감사의 오류 비율 사용

특정 상황에서 CDTFA는 현재 감사 중 매출 또는 외상매입금 부분에 대해 귀사 사업의 이전 감사 중 나타난 오류 비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율을 사용함으로써 CDTFA는 더 효율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 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감사관과 감사 감독관이 귀사에 연락하여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줍니다. 귀사가 CDTFA의 이전 감사의 오류 비율 사용을 승인하면 CDTFA는 귀사의 감사가 이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유를 설명한 상세한 요약 문서를 제공합니다.

이전 감사 오류 비율은 2가지 후속 감사 시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보조 감사(Computer-assisted Audits)

기록이 전자 형식으로 보관된 경우 CDTFA는 그 전자 기록을 검토하여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더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CDTFA에서는 Computer-assisted Audits (컴퓨터 보조 감사 CAA)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는 이 방식을 기존의 감사보다 더 빠르고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서류의 양이 대폭 감소합니다.

CAA 도중 CDTFA는 일부 서류 기록 외에도 전자 기록을 조사합니다. 귀사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면 CDTFA에서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해당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CDTFA는 지침을 제공하고 귀사의 정보 시스템 담당 직원과 협력하여 CDTFA에서 사용 가능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47 컴퓨터 보조 감사 관련 사항\(What to Expect in a Computer-Assisted Audit\)](#)을 참조하십시오.

## 심층 검토

기록 검사 중 신고 오류 가능성이 확인되면 감사관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밀 조사는 실제 기준(모든 거래 확인) 또는 표본 기준(일부 거래 확인)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표본 기준 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사관은 통계적 표본을 사용하려 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감사관이 검토 대상인 모든 거래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충분한 거래 내역을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관은 일부 매출에 대한 송장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모든 매출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통계적 표본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사관은 다른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할 때 감사관은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표본 추출 요소에 대해 귀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감사관이 실제 또는 표본 기준 중 어떤 기준으로 기록을 평가할지는 귀 사업체의 유형, 규모, 복잡성 및 회계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표본 추출은 실제 기준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 때 사용됩니다. 많은 경우 감사관은 동일한 감사에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 구매액은 실제 기준 방식으로, 매출은 표본 기준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은 기록 검토를 위해 표본 추출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은 귀사 또는 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감사 방식 및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한 모든 질문에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우려 사항을 감사관이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될 경우, 감사관의 감독관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감사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감사관에게 추가로 정보를 제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감사 결과

### 종결 회의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관은 귀사 및/또는 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참석하는 종결 회의 일정을 정합니다. 감사관의 감독관도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종결 회의에서 감사관은 가능한 환급 또는 추가 세금이나 수수료에 대해 설명하거나 신고서가 제출된 상태 그대로 승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대리인이 있더라도 귀사도 종결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결 회의는 감사 관련 문서를 상세히 검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감사 절차와 관련한 추가 질문을 하거나 사업체에 법률이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는 향후 세금이나 수수료를 제대로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DTFA 감사관은 귀사에 정리된 모든 감사 관련 문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본에는 감사 과정에서 사용된 검사 및 검사 절차를 문서화한 색인화된 일련의 일정이 포함됩니다. 또한 감사 관련 문서에는 기록, 수행한 검사의 목적,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감사관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사는 감사관에게 감사 결과에 대한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추후 설명될 내용이나, 감사관의 감독관이나 다른 CDTFA 대리인과 의견을 논의할 기회가 귀사에 주어질 것입니다.

### 감사 결과 통지

감사 결과 납부할 세금이나 수수료 없거나 환급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귀사는 신고서가 제출된 대로 승인되었다는 서신을 받습니다.

감사관은 귀사가 세금이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환급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결과를 요약한 **현장 감사 보고서** 또는 **조사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귀사가 감사 결과에 동의한다고 표시한 경우 보고서는 정확성을 완결성을 위해 검토됩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귀하는 다음 서류를 받습니다.

- 결정 통지서 (청구용), 또는
- 환급 통지서

각 유형의 통지서 및 이의 제기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청구 또는 환급 통지서\(Billing or Refund Notice\)](#)를 참조하십시오.

감사 보고서 및 감사 작업 문서의 사본은 최소 4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CDTFA에게 알리면 일반적으로 감사관은 최종 감사 보고서 준비를 연기하고 귀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을 허용합니다. 귀사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 입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문서의 제출에 관하여 감사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감사관은 그 이유와 문서의 제출을 고려한 후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감사 결과의 조정,
- 추가 정보 요청 및 추가 논의 주선
- 분쟁 해결의 다음 단계인 감사 감독관과의 논의 권고



## 감사 감독관과 논의

감사관은 귀사가 감사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감독관에게 알릴 것이며, 감사 감독관은 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 귀사로 전화 연락할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귀하는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근거를 설명하고 의견 불일치의 해결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 감독관은 귀사가 제시한 근거를 검토한 후 감사 결과의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제안된 조정에 대해 귀사와 논의합니다. 조사 결과에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감사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회의 후 감사관은 최종 감사 결과를 요약한 **현장 감사 보고서** 또는 **조사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귀사가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고서에 명시된 경우, 동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CDTFA 대리인과 만나서 논의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 CDTFA 대리인과의 논의

귀사가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감사 보고서에 명시된 경우, 서신에 지정된 대리인과 10일 이내에 논의 일정을 정하도록 요청하는 서신이 발송됩니다.

**1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감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 및 청구 또는 환급을 위해 **현장 감사 보고서** 또는 **조사 보고서**를 보냅니다.

해당 논의는 CDTFA로부터 청구 또는 환급 통지를 받기 전 최종 단계이므로, 귀사는 의견 불일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감사 감독관과 가진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CDTFA 대리인이 당시 귀사가 제공한 정보를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세금 환급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조정 내용은 귀사와 논의할 것입니다. 다음 CDTFA 대리인은 감사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문제를 평가합니다. 밝혀진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이후 해당 대리인은 적절한 **결정 통지서(청구용)** 또는 **환급 통지서**를 발행하도록 권고합니다.

## 납부액 선납

감사 결과에 대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추가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된 금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납부금은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금액에 먼저 적용됩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수수료에 대한 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해당 세금이나 수수료를 전액 납부하면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공기 제트 연료세를 비롯한 자동차 연료세 납부액을 지불할 경우 납부액은 먼저 이자 비용, 그 다음 벌금(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납부해야 할 자동차 연료세가 있을 경우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 에 있는, 또는 감사관이 제공하는 **CDTFA-1, 감사 지불 정보**를 제출하여 청구 통지를 받기 전에 전체 금액 또는 그 일부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는 선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불해야 할 금액의 선납이 감사 결과에 대한 귀사의 동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 청구 또는 환급 통지서

### 결정 통지서(청구용)

세금이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을 의미하는 결정 통지서(청구용)를 받은 경우 해당 청구 통지서의 발행일에 유의하십시오.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 청구된 금액 납부
-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제기(재결정 청원) 제출

해당 기간 내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미납 세금 또는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구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CDTFA에서 유치권 또는 압류를 포함한 징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징수 절차에 대한 내용은 [간행물 54 징수 절차\(Collection Procedures\)](#)를 참조하십시오.

30일 기한을 넘기면 이의 제기(재결정 청원)를 할 수 없으며 청구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납부 건에 대한 환급 요청을 제출하여 납부한 금액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7, 이의 제기 절차: 판매세 및 사용세, 특별세 및 수수료를 참조하십시오.](#)

#### 이자 비용

(결정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즉, 재결정 청원을 접수)한 경우 청구된 세액, 수수료 금액 또는 최소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한 납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통지일 이후 미납 세금 또는 수수료 금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재결정 청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의 제기가 성공적으로 해결되면 초과 납부된 세액 또는 수수료는 이자와 함께 환급됩니다. 대부분의 청원은 청원이 처음 접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되지만 경우에 따라 해결되는 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CDTFA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1-800-400-7115(CRS:711)의 고객 서비스 센터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미납 금액에 적용되는 현재 이자율 및 환급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여 이의 제기 상태에 대한 정보나 현재까지 누적된 이자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에서 [온라인 이자 계산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자원을](#) 선택한 다음 드롭다운에서 [계산기](#)를 선택한 다음 [계산](#) 아래에서 [이자](#)를 선택합니다.

### 이자 및 과태료

감사 관련 이자와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75, 이자, 과태료 및 징세 비용 회수 수수료](#)를 참조하십시오.

### 환급 통지서

CDTFA에서 귀사에 환급을 발하기 전에 CDTFA 또는 기타 국가 기관에 미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CDTFA는 해당 세액을 충당하고 남은 환급액을 이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 지급 명령서는 주정부 감사관이 발행하고 통지서와 함께 발송됩니다. 발송 시기는 일반적으로 귀사가 [현장 감사 보고서](#) 접수한 후로부터 4~8주입니다.

받아야 할 환급액이 더 크다고 생각될 경우 CDTFA에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17](#)을 참조하십시오.

## 추가 이의 제기 절차(간행물 17)

이 시점 이후의 이의 제기 단계는 [간행물 17 이의제기 절차: 판매세 및 사용세, 특별세 및 수수료](#)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직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 감사관에게 사본을 요청하거나 [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에서 사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CDTFA에서 발송한 모든 통지서 및 서신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명시된 기한 내에 응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CDTFA는 귀사의 이의 제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분쟁 금액의 합의 제안

이의 제기 진행 중 해당 케이스에 대한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간행물 17은 합의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세액조정 제안

Offer in Compromise(세액조정 제안 OIC) 프로그램은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소득 또는 자산이 없거나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전액을 지불할 수단이 없는 납세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OIC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는 폐쇄된 계정과 연관된 확실한 최종 세액의 납부와 관련하여 더 적은 금액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월 1일까지 OIC 프로그램은 적절한 활성 계정의 경우에도 납세자가 세금, 수수료 또는 추징금을 징수하고 이전에 세액 조정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세액 조정을 제안합니다.

[CDTFA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간행물 56, 세액 조정 제안](#)에서도 OIC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추가 정보

추가 정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래 나열된 리소스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CRS:711)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은 주 지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30~오후 5:00(태평양 표준시) 사이에 근무합니다. 영어 외 다른 언어로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 사무소

CDTFA 웹사이트([www.cdtfa.ca.gov/office-locations.htm](http://www.cdtfa.ca.gov/office-locations.htm))에서 모든 사무소 위치가 포함된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 1-800-400-7115(CRS:711)번을 통해 고객 서비스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 인터넷

[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

CDTFA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법률이 사업에 적용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예: 법률, 규정, 양식, 간행물, 산업 가이드 및 정책 안내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에서 판매자 허가증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허가증, 면허 또는 계정 확인](#)(Verify a Permit, License, or Account)참조).

간행물의 다국어 버전은 웹사이트([www.cdtfa.ca.gov/formspubs/pubs.htm](http://www.cdtfa.ca.gov/formspubs/pubs.htm))에서 제공됩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할 때 유용한 다른 리소스는 캘리포니아주 세무 서비스 센터([www.taxes.ca.gov](http://www.taxes.ca.gov))입니다.

### 세금 정보 보고서

분기별로 제공되는 *Tax Information Bulletin*(세금 정보 보고서 TIB)에는 특정 유형의 거래 시 법률 적용에 관한 글, 새롭게 개정된 간행물 소식 및 기타 관련 글이 실려 있습니다. 웹사이트([www.cdtfa.ca.gov/taxes-and-fees/tax-bulletins.htm](http://www.cdtfa.ca.gov/taxes-and-fees/tax-bulletins.htm))에서 최신 TIB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DTFA 업데이트 이메일 리스트에 등록하면 최근 발행된 TIB가 웹사이트에 게시될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료 강의 및 세미나

CDTFA는 납세 신고서와 관련한 개별지도도를 포함한 판매세 및 사용세 기본 사항에 관한 무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의는 다국어로 제공됩니다. 특정 강의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지역 사무소로 문의하십시오.

### 서면 세금 자문

보안을 위해 세금 자문은 서면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CDTFA에서 거래와 관련하여 잘못된 서면 자문을 제공받았고, 귀사가 해당 자문을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세금을 적절히 납부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부과된 세금, 과태료 또는 이자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자문 요청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문이 적용되는 납세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거래 관련 사실과 상황이 모두 설명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조세·수수료 정보에 대한 서면 자문을 구하려면 CDTFA 웹사이트([www.cdtfa.ca.gov/email](http://www.cdtfa.ca.gov/email))에 방문하여 자문 요청을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해당 요청을 서신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목재 제품 평가세 선불 휴대폰 통신 서비스(MTS) 추가세를 포함한 판매세 및 사용세의 일반 정보를 알아보려면 다음 주소로 요청해 주십시오. Audit and Information Section, MIC:44,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44.

기타 모든 특별세 및 수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서면 조언을 구하려면 다음 주소로 자문 요청을 보내주십시오. Program Administration Branch, MIC:31,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1.

### 납세자 권리 보호

납세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거나 일반적 경로(예: 관리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간행물 70 캘리포니아주 납세자 권리의 이해\(Understanding Your Rights as a California Taxpayer\)](#) (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70-K, [캘리포니아주 판매자 허가증](#))를 참조하거나 1-888-324-2798로 연락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사무소](#)(Taxpayers' Rights Advocate Office)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팩스 번호는 1-916-323-3319입니다.

원하는 경우 다음 주소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Taxpayers' Rights Advocate, MIC:70,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70.

## 규정, 양식 및 간행물

간행물별로 목록이 다릅니다.

귀사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규정, 양식, 간행물** 및 **제조업 가이드**의 발체 목록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된 특정 간행물도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규정

- 1698기록(Records)
- 1702승계인의 책임(Successor's Liability)
- 1702.5 책임이 있는 사람의 책임(Responsible Person Liability)
- 1702.6 자격 정지된 법인(Suspended Corporations)
- 1703 이자 및 과태료(Interest and Penalties)
- 1705년 면책(Relief from Liability)
- 1705.1 무고한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인 면책(Innocent Spouse or Registered Domestic Partner Relief from Liability)
- Computer-Assisted Audit)

### 서면 조언 요청 관련 주소

서면 조언을 받으려면 해당 부서나 지방 사무소에 서면으로 문의하십시오.

#### 판매세 및 사용세(Sales and Use Taxes)

**Audit and Information Section MIC:44**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44**  
 1-800-400-7115 (CRS:711)

- 판매세 및 사용세(Sales and Use Taxes)
- 사용세
- 목재 제품 평가세(Lumber Products Assessment)
- 선불 휴대폰 통신 서비스(Prepaid Mobile Telephony Services (MTS) )
- 노인, 중증 장애인, 가족에 대한 재택 보호( The Home Protection for Seniors, Severely Disabled, Families) 및 산불 또는 천재 지변 피해자법(Victims of Wildfire or Natural Disasters Act)(발의안 19)

### 간행물

- 17이의 제기 절차: 판매세 및 사용세, 특별세 및 수수료(Sales and Use Taxes and Special Taxes and Fees)
- 53감독 기반 감사 프로그램(Managed Audit Program)
- 54징수 절차(Collection Procedures)
- 70캘리포니아주 납세자 권리의 이해(Understanding Your Rights as a California Taxpayer)
- 75이자, 과태료 및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Interest, Penalties, and Collection Cost Recovery Fee)
- 147컴퓨터 보조 감사 관련 사항(What to Expect in a

#### 특별세 및 수수료

**프로그램 관리 지사(STFD) MIC:31**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1**  
 1-800-400-7115(CRS:711)

- 항공기 제트 연료세(Aircraft Jet Fuel Tax)
- 주류세(Alcoholic Beverage Tax)
- 2003년 캘리포니아 담배 및 연초 제품 허가법(California 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Licensing Act of 2003)
- 캘리포니아 전자 담배 물품세(California Electronic Cigarette Excise Tax)
- 캘리포니아주 타이어세(California Tire Fee)
- 대마초세(Cannabis Taxes)
- 아동 납중독 예방세(Childhood Lead Poisoning Prevention Fee)
- 담배 및 토바코 제품세(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Tax)
- 스크린 달린 전자폐기물 재활용세(Covered Electronic Waste Recycling Fee)
- 디젤 연료세(Diesel Fuel Tax)
- 긴급전화 사용자 추가세(Emergency Telephone Users Surcharge)
- 에너지 자원 추가세(Energy Resources Surcharge)
- 환경세
- 유해 폐기물 환경세(Hazardous Waste Environmental Fee)
- 유해 폐기물 시설세(Hazardous Waste Facility Fee)
- 유해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수수료(Hazardous Waste Generation and Handling Fee)
- 종합 폐기물 관리료(Integrated Waste Management Fee)
- International Fuel Tax Agreement(국제연료세 협정 IFTA)
- 주간 사용자 디젤 연료세(Interstate User Diesel Fuel Tax)
- 납산 배터리 수수료(Lead-Acid Battery Fees)
- 리튬 추출 물품세(Lithium Extraction Excise Tax)
- 해양 침입종(평형수)수수료(Marine Invasive Species (Ballast Water) Fee)
- 자동차 연료세(Motor Vehicle Fuel Tax)
- 천연가스 추가세(Natural Gas Surcharge)
- 직업상 납중독 예방세(Occupational Lead Poisoning Prevention Fee)
- 기름 유출 대응, 예방 및 관리세(Oil Spill Response, Prevention, and Administration Fees)
- 보험사에 대한 세금(Tax on Insurers)
- 산림 벌채세(Timber Yield Tax)
- 지하 저장 탱크 관리세(Underground Storage Tank Maintenance Fee)
- 유류 사용세(Use Fuel Tax)
- 수자원 이용세(Water Rights Fee)



감사 목적 및 검토 대상 기록 각각의 경우에 따라 추가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항	페이지
항공기 제트 연료세(Aircraft Jet Fuel Tax)	15
주류세(Alcoholic Beverage Tax)	16
캘리포니아 전자 담배 물품세(California Electronic Cigarette Excise Tax)	17
캘리포니아주 타이어세(California Tire Fee)	18
대마초세(Cannabis Taxes, 재배세 포함)	19–20
담배 및 토바코 제품세(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Tax)	21–22
스크린 달린 전자폐기물 재활용세 (Covered Electronic Waste Recycling Fee)	23
디젤 연료세 면제 사용자(Diesel Fuel Exempt User)	24
디젤 연료세 공급자(Diesel Fuel Tax Supplier)	24
디젤 연료 최종 판매자(Diesel Fuel Ultimate Vendor)	25
디젤차 고속도로 사용자	26
긴급전화 사용자 추정금 – 서비스 공급자 및 직접 판매자	27
에너지 자원 추가세(Energy Resources Surcharge)	28
환경세	28
유해물질 발생 및 취급 수수료, 시설 사용료 (Hazardous Substances Generation and Handling Fee, and Facility Fee)	29
종합 폐기물 관리료(Integrated Waste Management Fee)	30
International Fuel Tax Agreement(국제연료세 협정 IFTA)	31
납산 배터리 수수료(Lead-Acid Battery Fees)	32
리튬 추출 물품세(Lithium Extraction Excise Tax)	33
목재 제품 평가세(Lumber Products Assessment)	34
자동차 연료세(Motor Vehicle Fuel Tax)	35
천연가스 추가세(Natural Gas Surcharge)	35
기름 유출 대응, 예방 및 관리세 (Oil Spill Response, Prevention, and Administration Fees)	36
선불 모바일 전화 서비스 소매업체 (Prepaid Mobile Telephony Service Retailer)	37
판매세 및 사용세(Sales and Use Taxes)	38
산림 벌채세(Timber Yield Tax)	38
지하 저장 탱크 관리세(Underground Storage Tank Maintenance Fee)	39
유류 사용세(Use Fuel Tax)	40

이 목록에 없는 세금 또는 수수료 프로그램에 등록된 경우, 감사관의 조사 중 필요한 기록에 대한 정보를 CDTFA에 문의하십시오. CDTFA의 해당 부서 또는 지사의 전화번호 및 주소는 [1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세금 또는  
수수료 \*

### 감사 목적

다음은 감사관이 확인하려 하는 정보  
유형의 예시입니다.

### 기록(Records)

감사관은 다음 유형의 기록(전자적으로  
보관되는 기록 포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 항공기 제트 연료세

- 판매한 제트 연료의 총량(갤런 기준)을 신고했습니까?
- 항공기 제트 연료 사용자로서 사용된 항공기 제트 연료량(갤런 기준)을 신고했습니까?
- 미군에 판매된 항공기 제트 연료량(갤런 기준)을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항공기 제조업체에 판매된 항공기 제트 연료량(갤런 기준)을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항공 일반 운송업체에 판매된 항공기 제트 연료량(갤런 기준)을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수출된 항공기 제트 연료량(갤런 기준)을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등록된 항공기 제트 연료 딜러에게 판매된 항공기 제트 연료량(갤런 기준)을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총 계정 원장, 구매 및 판매 분개장, 구매 및 판매 송장, 선하 증권, 구매 주문서 및 계약서를 포함하여 구매 또는 생산된 항공기 제트 연료 및 항공기 제트 연료 판매와 관련된 회계 장부
- 항공기 제트 연료의 모든 반출입 기록.
- 항공기 제트 연료의 실질재고조사 기록.
- 일반 운송업체 면세 증명서 사본.
- 미군을 대상으로 한 모든 매출 기록(구매 주문서, 판매 송장 및 계약서 등 증빙 서류 포함)
- 기내 급유 프로그램 및/또는 항공기 제트 연료(브랜드 있는)의 기타 급유 서비스와 관련한 항공기 제트 연료 공급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세금 또는  
수수료 \*

### 감사 목적

다음은 감사관이 확인하려 하는 정보  
유형의 예시입니다.

### 기록(Records)

감사관은 다음 유형의 기록(전자적으로  
보관되는 기록 포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 주류세 (Alcoholic Beverage Tax)

### 맥주 또는 와인의 양조업자 및 수입업자

- 연방 내국세 납부 시 내국세 수입  
보관품의 와인 반출을 신고했습니까?
- 캘리포니아주 안팎으로 반출입된  
내역을 신고했습니까?
- 맥주 또는 와인의 총 매출액을  
신고했습니까?
- 청구된 면세를 적절히 신고했습니까?
- 모든 와인 및 증류주에 요구되는 실질  
재고조사를 했습니까?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총계정원장,  
구매 및 판매 분개장, 입고 기록, 상세한  
실질재고조사 기록 등의 회계장부 및 기타  
사업 운영 요약 기록.
- 연방 소비세 신고서.
- 위에 나열된 기록의 유형(예: 판매 및  
구매 송장 및 선하증권)에 기입된 항목을  
증빙하는 원본 서류.
- CDTFA에 제출한 신고서 사본과 신고서  
작성 시 사용된 관련 서류 및 일정.

### 맥주 제조업체

- 창고 보관 양조 시설에서 연방 세금이  
납부된 맥주의 반출을 신고했습니까?
- 캘리포니아주 안팎으로 반출입된 모든  
내역을 신고했습니까?
- 맥주의 총 매출액을 신고했습니까?
- 청구된 면세를 적절히 신고했습니까?
- 모든 벌크 및 병맥주에 요구되는 실질  
재고조사를 했습니까?

### 증류주

- 증류주의 총 매출을 신고했습니까?
- 증류주의 재고 거래를 신고했습니까?
- 청구된 면세를 적절히 신고했습니까?
- 증류주에 요구되는 실질재고조사를  
수행했습니까?

세금 또는  
수수료 \*

### 감사 목적

다음은 감사관이 확인하려 하는 정보  
유형의 예시입니다.

### 기록(Records)

감사관은 다음 유형의 기록(전자적으로 보관되는  
기록 포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전자 담배 물품세 (California Electronic Cigarette Excise Tax)

- 니코틴을 포함하거나 니코틴과 함께 판매한 전자 담배 판매로 인한 모든 총수입을 신고했습니까?
- 모든 소매점의 판매를 포함했습니까?
- 니코틴을 포함하거나 니코틴과 함께 판매하는 전자 담배를 판매할 때 올바른 세율을 적용했습니까?
- 니코틴을 포함하거나 니코틴과 함께 판매한 전자 담배 판매에 세율을 적절하게 적용했습니까?
- 세금 신고서에 계산된 금액보다 더 많은 소비세를 징수한 경우 징수된 초과 소비세를 적절하게 신고했습니까?

- CDTFA에 제출된 세금 신고서 사본, 신고서 작성에 사용된 워크시트 및 지원 일정.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총계정원장 및 주 및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포함한 사업 운영에 대한 기타 요약 기록을 포함한 회계 장부.
- 판매 및 구매 송장, 구매 주문서, 선하 증권, 반품된 제품에 대한 대변 메모, 계약서, 은행 명세서, 신용 카드 명세서, 금전 등록기 테이프 및 귀사의 사업 운영 결과로 생성되는 기타 다른 문서와 같은 귀사 장부의 기장을 뒷받침하는 원본 문서, .
- Point of Sale(판매 시점 POS) 기록.
- 캘리포니아 전자 담배 소비세가 징수되지 않은 거래를 뒷받침하는 기록.



세금 또는  
수수료 \*

### 감사 목적

다음은 감사관이 확인하려 하는 정보  
유형의 예시입니다.

### 기록(Records)

감사관은 다음 유형의 기록(전자적으로  
보관되는 기록 포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주 타이어세

- 소매 판매된 모든 타이어를 신고했습니까?
  - 직접 사용한 타이어와 회사 보증 타이어를 모두 적절히 포함했습니까?
  - 도매 판매된 타이어는 적절히 제외했습니까?
  - 새 자동차나 중고 자동차, 트레일러, 건설 또는 농기구에 부착된 타이어는 적절히 포함했습니까?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장부 및 연방 및 주 소득세 신고서를 포함하는 기타 사업 운영 요약 기록.
  - 판매 송장, 대변 메모, 구매 주문서 등 장부에 기입된 내용을 증빙하는 원본 서류 및 사업 운영의 결과인 기타 서류.
  - 소매 및 도매로 판매된 타이어의 수량이 명시된 판매 보고서 또는 기타 보고서.
  - CDTFA에 제출한 신고서 사본과 신고서 작성 시 사용된 관련 서류 및 일정.
  - 재고 기록 및 증빙 서류.



세금 또는  
수수료 \*

**감사 목적**

다음은 감사관이 확인하려 하는 정보  
유형의 예시입니다.

**기록(Records)**

감사관은 다음 유형의 기록(전자적으로 관리되는  
기록 및 캘리포니아주 대마초 추적 시스템  
(California Cannabis Track-and-Trace System)에  
보관되는 기록 포함)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마초 소비세  
(2023년 1월 1  
일 이전)**

-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유통업체가 대마초 소매상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에 대해 그 유통업체가 CDTFA에 대마초 물품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까?
- 해당 유통업체가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평균 시장 가격을 올바르게 계산했습니까?
- 해당 유통업체가 신고 기간 중 소매업체에 판매하거나 양도한 모든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평균 시장 가격을 신고했습니까?
- 해당 유통업체는 소매점에서 징수한 대마초 물품세의 과다 징수액을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해당 유통업체는 CDTFA로 납부한 후 소매업체에 반환한 대마초 소비세의 과다 징수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절히 신고했습니까?

**재배세**

- 해당 유통업체는 2022년 7월 1일 이전의 신고 기간 동안 시중 매장에서 유통된 모든 수확된 대마초를 신고했습니까?
- 해당 유통업체는 시중 매장에 유통된 모든 수확된 대마초를 적절한 카테고리 신고했습니까?
- 해당 유통업체가 시중 매장에 출시된 수확된 대마초의 양을 온스 단위로 적절하게 신고했습니까?

- CDTFA에 제출된 신고서 사본과 전자 대마초 세금 신고서를 준비하는 데 사용된 워크시트 및 증빙 일정.
- 해당할 경우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의 평균 시장 가격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워크시트.
- 해당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총계정원장, 월별 재고 보고서, 소매 영수증 사본 및 기타 사업 운영 요약 기록을 포함한 회계 장부.
- 판매 송장, 구매 송장, 구매 주문서, 선하 증권,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 양도에 관한 적하 목록, 반품된 제품에 대한 크레딧 메모, 은행 명세서, 취소된 수표, 현금 분배 기록, 신용 카드와 같은 해당 장부 항목을 뒷받침하는 원본 문서 진술 및 관련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기타 문서.
- 거래 데이터를 포함하는 모든 전자적 판매 시점 (POS) 기록.
- 재배세를 납부한 경작자에게 반환된 재배세 또는 대마초 소매상 또는 구매자에게 반환된 대마초 물품세 증빙 기록.
- 징수하여 CDTFA로 납부한 후 소매업체 또는 구매자에게 반환한 대마초 물품세의 과다 징수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증빙하는 기록.
- 재배세 또는 대마초 물품세가 징수되거나 납부되지 않은 거래에 대한 증빙 기록.

세금 또는  
수수료 \*

**감사 목표(계속)**

다음은 감사관이 확인하려 하는 정보  
유형의 예시입니다.

**대마초 소비세  
(2023년 1월 1  
일 및 그 이후)**

- 2023년 1월 1일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해 대마초 소매업체가 대마초 물품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까?
- 신고 기간 동안 고객에게 판매된 모든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소매 판매 총수입을 신고했습니까?
- 고객에게 징수한 대마초 물품세의 과다 징수액을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귀사에게 판매 또는 양도되었고 2023년 1월 1일 및 그 이후에 소매점에서 판매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에 대해 유통업체에 지불된 대마초 물품세 공제를 적절하게 신고했습니까?
- 해당되는 경우, 귀사는 대마초 통제부(Department of Cannabis Control) 면허 수수료 면제 자격이 있고 공급업체 보상을 유지하도록 CDTFA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20% 공급업체 보상을 적절하게 유지했습니까?

**기록(계속)**

감사관은 다음 유형의 기록(전자적으로 관리되는 기록 및 캘리포니아주 대마초 추적 시스템(California Cannabis Track-and-Trace System)에 보관되는 기록 포함)을 검토해야 합니다.

- 폐기, 도난 또는 재고에서 제거되었지만 소매업체에서 판매되지 않은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 양의 증빙 기록.
- 캘리포니아주 대마초 추적 및 조사 시스템(California Cannabis Track-and-Trace System)에 입력된 재고를 포함하여 구매 및 유통된 모든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의 재고 기록.
- 대마초 제품이 저장되거나 판매되는 소매점의 모든 위치 목록.
- 유통업체 및 공급업체 목록.
- 대마초 물품세 신고서 사본, 전자 POS 기록 또는 금전 등록기 테이프, 소매 구매자에게 제공된 영수증 사본 또는 대마초 물품세 공제를 증빙하는 기타 문서.
- 다른 상업용 대마초 영업 면허 소지자와의 사업 계약을 증빙하는 계약서 또는 문서 사본.
- 동일한 상업용 대마초 영업 면허 또는 기타 면허에 따라 다른 상업용 대마초 영업 참여를 증빙하는 계약서 또는 문서의 사본.
- 상업용 대마초 영업 면허 사본 및 해당 주 면허 기관에 제출된 신청서.
- 해당되는 경우 대마초 통제국의 면허 수수료 면제 서신 사본.



세금 또는  
수수료 \*

### 감사 목적

다음은 감사관이 확인하려 하는 정보  
유형의 예시입니다.

### 기록(Records)

감사관은 다음 유형의 기록(전자적으로  
보관되는 기록 포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 담배 및 토바코 제품세 (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Tax)

### 담배세

- 납세필 인지가 부착된 담배 및 부착되지 않은 담배의 기초 재고 및 기말 재고에 대한 실사를 수행했습니까?
- 면세 유통량을 적절히 청구했습니까?
- 청구한 사용 불가 납세필 인지는 적절히 공제했습니까?
- 스케줄 F에 따라 비참여 제조업체(NPM) 브랜드 구매를 신고했습니까?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장부 및 기타 사업 운영 요약 기록.
- 장부에 기입된 내용을 증빙하는 원본 서류 (예: 판매 송장, 구매 송장, 구매 주문서, 선하증권, 반품된 제품과 관련한 대변 메모, 은행 거래 명세서, 취소된 수표, 현금 유통 기록, 신용카드 명세서) 및 사업 운영의 결과인 기타 서류.
- 납세필 인지가 찍힌 담배 및 찍히지 않은 담배, 납세필 인지가 부착된 담배 및 부착되지 않은 담배의 실질재고조사 기록.
- 담배 납세필 인지 기록 및 구매 기록.
- CDTFA에 제출한 신고서 및/또는 신고서 사본과 신고서 및/또는 신고서 작성 시 사용된 정산표 및 증빙 일정 서류.





세금 또는  
수수료 \*

### 감사 목적

다음은 감사관이 확인하려 하는 정보  
유형의 예시입니다.

### 기록(Records)

감사관은 다음 유형의 기록(전자적으로  
보관되는 기록 포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 담배 및 토바코 제품세 (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Tax)

### 토바코 제품세

- 도매로 유통되는 담배 제품의 (할인 또는 중간상 공제 전) 원가를 신고했습니까?
- 면세 유통량을 적절히 청구했습니까?
- 캘리포니아주 외부의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했거나 다른 국가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수입된 담배 제품을 신고했습니까?
- 롤링토바코(RYO) 담배 제품을 스케줄 T에 신고했습니까?
- 전자 담배 및 니코틴 세금 지출 일정이 포함된 베이핑 제품에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 담배 및/또는 베이핑 제품의 판매를 신고했습니까?
- 세금 공제 조정 워크시트에 반환된 담배 제품에 대한 공제를 보고한 경우 제대로 청구했습니까?
- 세금 신고서에 계산된 금액보다 더 많은 물품세를 징수한 경우 징수된 초과 세금을 적절하게 신고했습니까?

- 판매 송장, 구매 송장, 배송 서류, 반품된 제품에 대한 대변 메모 등 청구된 면세 유통 일정 및 증빙 서류.
- 과세 및 비과세 제품을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구매의 재고 기록. 과세 및 비과세 담배 제품은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 비과세 담배 제품은 소매 재고에서 납세필 담배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 미국 외 지역에서 수입한 담배 제품을 증빙하는 기록. 관세사 송장, 미국 세관 수입 서류, 운송비에 대한 증빙 서류 등 담배 판매업체 구매 송장 포함.
- 모든 담배 제품, 공급업체 및 주소 목록. 토바코 구매 금액 및 허용되는 할인이 명시된 계약서 포함.
- 주류 및 토바코의 Tax and Trade Bureau (과세 및 무역청TTB) 납세 신고서 및 보고서 사본.
- 연방 및 주 소득세 신고서.
- 토바코 및 담배 제품 유통업체, 도매업체, 토바코 제품 제조업체/수입업체 세금 신고서, 증빙 일정 서류 및 워크시트, 세금 신고서를 준비하는 데 사용되는 기타 서류.
- 토바코 제품 유통업체 신고서 보고에 대한 할인 및 중간상 공제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워크시트.
- 총계정원장, 계정과목표, 대차대조표, 구매 및 판매 분개장, 은행 거래 명세서, 신용카드 명세서, 취소된 수표, 현금 유통 기록.
- 판매 및 구매 송장, 선하증권 등 장부 및 기록에 기입된 내용을 증빙하는 원본 서류.

세금 또는  
수수료 \*

### 감사 목적

다음은 감사관이 확인하려 하는 정보  
유형의 예시입니다.

### 기록(Records)

감사관은 다음 유형의 기록(전자적으로  
보관되는 기록 포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 스크린 달린 전자폐기물 재활용세 (Covered Electronic Waste Recycling Fee)

- 판매 또는 대여한 Covered Electronic Device(스크린 달린 전자장치 CED)를 신고했습니까?
- 판매된 총 품목 수에서 직접 소비한 새 CED 또는 리퍼브 CED의 모든 매출을 신고했습니까?
- 리퍼브가 아닌 판매된 모든 중고 CED를 적절하게 제외했습니까?
- 주간 또는 국제 상거래에서 판매되는 모든 CED를 적절하게 제외했습니까?
- 재판매 목적으로 다른 소매업체에 판매된 모든 CED를 적절하게 제외했습니까?
- 반품 상품 대변 기입란에 반품된 CED 수량을 적절하게 기입했습니까?
- 적정 카테고리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CED를 적절히 신고했습니까?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총계정원장 및 주 및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포함한 사업 운영에 대한 기타 요약 기록을 포함한 회계 장부.
- 판매 및 구매 송장, 구매 주문서, 계약서, 은행 거래 명세서 등 장부에 기입된 내용을 증빙하는 원본 서류 및 사업 운영의 결과인 기타 서류.
- 재판매 증명서, 면세 증명서, 선하증권 또는 청구된 면세 판매를 증빙하는 기타 서류.
- CDTFA에 제출한 신고서 사본과 신고서 작성 시 사용된 관련 서류 및 일정.
- 재고 기록 및 증빙 서류.



세금 또는  
수수료 \*

**감사 목적**

다음은 감사관이 확인하려 하는 정보  
유형의 예시입니다.

**기록(Records)**

감사관은 다음 유형의 기록(전자적으로  
보관되는 기록 포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디젤 연료세  
면제 사용자  
(Diesel Fuel  
Exempt User)**

- 과세 대상 디젤 연료 중 선박에 사용된 연료량(갤런 기준)을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과세 대상 디젤 연료 중 비포장도로에서 운영하는 등록 면제 건설 장비에서 사용된 연료량(갤런 기준)을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과세 대상 디젤 연료 중 보조 장비에 사용된 연료량(갤런 기준)을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비과세 디젤 연료를 제외한 과세 대상 디젤 연료의 구매 내역을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비과세 및 과세 디젤 연료의 판매를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선박 안전 정박 보조 장비 해당 비율을 올바르게 적용했습니까?

- 일반 디젤 및 비과세 염색 디젤 연료, 납세 대상 제품의 구매 및 판매 관련 회계장부, 총계정원장 계정, 구매 및 판매 분개장, 구매 및 판매 송장, 선하증권, 구매 주문서 및 계약서 등 포함.
- 비과세 및 과세 대상 디젤 연료 실질재고.
- 연료 기록, 이동 보고서, 고속도로 및 비포장도로 디젤 차량 목록, 장비 목록 및 면세 연료 사용 시험을 포함하여 환급이 청구된 면세 연료량(갤런 기준)을 증빙하는 서류.
- CDTFA에 제출한 청구서 사본과 청구서 작성 시 사용된 관련 서류 및 일정.

**디젤 연료세  
공급자(Diesel  
Fuel Tax  
Supplier)**

- 디젤 연료 및 설명 가능한 제품의 모든 락 반출을 신고했습니까?
- 무면허 공급업체에게 락 가격보다 높게 판매한 모든 디젤 연료를 신고했습니까?
- 쌍방 교환을 올바르게 신고하셨습니까?
- 반출입된 총 갤런을 신고했습니까?
- 바이오디젤, 순식물성오일, 폐식물성오일 판매를 신고했습니까?
- 모든 락 가격 이하의 구매는 납세 완료 구매였습니까?
- 적절한 문서와 함께 총 공제액을 갤런 단위로 올바르게 청구하고 적정 세율을 적용했습니까?
- 디젤 연료 사용량을 신고했습니까?
- 신고 시 올바른 세율을 사용했습니까?

- 락 반출, 구매, 디젤 연료 매출 및 납세 대상 제품 관련 회계장부, 총계정원장 계정, 구매 및 판매 분개장, 구매 및 판매 송장, 선하증권, 구매 주문서 및 계약서 등 포함.
- 디젤 연료의 모든 반출입 기록.
- 디젤 연료 및 납세 대상 제품의 실질재고조사 기록.
- 정유 생산 보고서.
- 터미널 운영자 보고서.
- 면세 증명서, 비포장도로 또는 사용 기록 또는 청구된 면세 및/또는 세액공제를 증빙하는 모든 서류.
- CDTFA에 제출한 신고서 및 청구서 사본과 신고서 작성 시 사용된 관련 서류 및 일정.

세금 또는  
수수료 \*

**감사 목적**

다음은 감사관이 확인하려 하는 정보  
유형의 예시입니다.

**기록(Records)**

감사관은 다음 유형의 기록(전자적으로  
보관되는 기록 포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디젤 연료 최종  
판매자(Diesel  
Fuel Ultimate  
Vendor)**

- 농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농민에게 판매된 납세 완료된 연료 판매량(갤런 기준)을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면세 버스 운영자에게 판매된 납세 완료된 연료 판매량(갤런 기준)을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미국 정보 기관에 판매된 납세 완료된 연료 판매량(갤런 기준)을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캘리포니아주에서 수출된 판매된 납세 완료된 연료 수출량(갤런 기준)을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면세 염색 디젤 연료 구매와 과세 대상 일반 디젤 연료 구매를 올바르게 구분하여 적절히 신고했습니까?
- 고속도로에서 차량 운행 외의 목적으로 운영 시 사용된 납세 완료된 디젤 연료량을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과세 대상 제품과 디젤 연료의 구매 및 판매 관련 회계 장부, 총계정원장 계정, 구매 및 판매 분개장, 구매 및 판매 송장, 선하증권, 구매 주문서 및 판매 계약서 등 포함.
- 모든 수출 기록.
- 비과세 및 과세 대상 디젤 연료 구매량(갤런 기준)을 구분하는 기록.
- 디젤 연료 및 기타 과세 대상 제품의 비과세 및 납세 완료 갤런의 실질재고조사 기록.
- 농민 및 면세 버스 운영자의 적시 면세 증명서.
- 미군 대상 판매 기록(구매 주문서, 판매 송장 및 계약서 등 증빙 서류 포함).
- 고속도로에서 사용되었다고 청구한 납세 완료 디젤 연료에 대한 증빙 서류.
- CDTFA에 제출한 신고서 및 청구서 사본과 신고서 작성 시 사용된 관련 서류 및 일정.



세금 또는  
수수료 \*

### 감사 목적

다음은 감사관이 확인하려 하는 정보  
유형의 예시입니다.

### 기록(Records)

감사관은 다음 유형의 기록(전자적으로  
보관되는 기록 포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 디젤차 고속도로 사용자

- 이동한 모든 주행거리(마일 기준)를 신고했습니까?
  - 보고 기간에 적격 차량이 사용한 총 연료량(갤런 기준)을 신고했습니까?
  - 보고 기간에 적격 차량이 사용한 납세 완료 연료량(갤런 기준)을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개별 차량 주행거리 보고서, 운전자 일지, 이동 보고서 및/또는 탑승 기록 장치 등의 주행거리 기록.
  - 주행거리 기록에는 이동 날짜(출발 및 도착), 이동 출발지 및 목적지, 출발 및 도착 시 주행거리계 판독값, 국경을 넘을 때의 주행거리계 판독값, 이동 경로, 총 주행거리(마일 또는 km), 국가별 주행거리, 차량 (단위 및 전체)번호 등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연료 기록 및 연료 영수증에는 구매한 날짜, 판매자의 이름 및 주소, 구매한 연료량(갤런 또는 리터), 구매한 연료 유형, 갤런 또는 리터당 가격 또는 총 판매액, 세액(포함된 경우), 연료가 주입된 차량(단위 및 전체) 번호, 구매자 이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CDTFA에 제출한 신고서 및 청구서 사본과 신고서 작성 시 사용된 관련 서류 및 일정.

세금 또는  
수수료 \*

### 감사 목적

다음은 감사관이 확인하려 하는 정보  
유형의 예시입니다.

### 기록(Records)

감사관은 다음 유형의 기록(전자적으로  
보관되는 기록 포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 긴급 전화 사용자 추정세 - 서비스 공급자 (911 및 988 추가 세 포함)

- 모든 유선 통신 서비스 라인을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모든 무선 통신 서비스 라인을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모든 음성 인터넷 프로토콜(VoIP) 서비스 라인을 올바르게 보고했습니까?
- 선불 이동 통신 서비스(MTS)의 모든 소매 판매를 신고했습니까?
- 청구 합산기의 사용 여부를 명시했습니까?
- 적절한 증빙 일정을 제출했습니까?
- 정확한 할증 요율을 청구했습니까?
- 추가세 적용 금액은 정확히 계산했습니까?
- 선불 이동 통신 서비스 관련 부실채권을 청구했습니까?
- 과다 징수된 추가세를 신고했습니까?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장부 및 연방 및 주 소득세 신고서를 포함하는 기타 사업 운영 요약 기록.
- 송장, 결산표, 고객 서비스 기록 등 장부에 기입된 내용을 증빙하는 원본 서류 및 사업 운영의 결과인 기타 서류.
- 정부 규제 기관에 제출된 서류 및 제공된 전화 통신 서비스를 설명하는 기타 서류.
- CDTFA에 제출한 신고서 사본과 신고서 작성 시 사용된 관련 서류 및 일정.
- 캘리포니아 내 귀사 사업의 트래픽 또는 통화 패턴 연구 표본



세금 또는 수수료 \*

**감사 목적**

다음은 감사관이 확인하려 하는 정보 유형의 예시입니다.

**기록(Records)**

감사관은 다음 유형의 기록(전자적으로 보관되는 기록 포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에너지 자원  
추가세(Energy  
Resources  
Surcharge)**

- 판매된 전기 에너지의 모든 킬로와트시(kwh)를 신고했습니까?
- 다른 전력 회사를 대상으로 한 판매량은 적절히 제외했습니까?
- 직접 사용하거나 생산, 송전, 배전 과정에서 손실된 에너지는 적절히 제외했습니까?
- 대손 조정액을 적절히 제외했습니까?
- 에너지 할증료 면세 대상 서비스 이용자만 면세로 기록했습니까?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장부 및 연방 및 주 소득세 신고서를 포함하는 기타 사업 운영 요약 기록.
- 청구서, 결산표, 고객 서비스 기록 등 장부에 기입된 내용을 증빙하는 원본 서류 및 사업 운영의 결과인 기타 서류.
- CDTFA에 제출한 신고서 사본과 신고서 작성 시 사용된 관련 서류 및 일정.

**환경세**

- 신고서에 정확한 직원 수를 신고했습니까?

- 급여 보고서 및 직원, 급여 및 근무 시간이 포함된 기타 모든 서류.
- 고용 계약 또는 계약서.



세금 또는  
수수료 \*

### 감사 목적

다음은 감사관이 확인하려 하는 정보  
유형의 예시입니다.

### 기록(Records)

감사관은 다음 유형의 기록(전자적으로  
보관되는 기록 포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 유해물질 발생 수수료/발생 및 처리 수수료 및 시설 사용료

- 발생된 유해폐기물의 총량을 신고하고 적절히 분류했습니까?
-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발생 시킨 모든 사업장 위치가 CDTFA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 면제 폐기물을 적절하게 문서화했습니까?
- 신고서에 보고된 분류가 시설의 허용된 크기와 일치합니까?
- 시설이 허용된 요건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 CDTFA에 제출한 신고서 사본과 보고서 (내용을 증빙하는 정산표 포함)
- 현장 위치에 할당된 모든 과거 및 현재 환경보호국 번호의 목록.
- 총량 티켓 및 폐기물 개요 서류 등의 증빙 서류 함께 제출된 유해 폐기물 명시.
- 생성된 폐기물의 양을 증빙하는 운송업체 청구서 또는 송장.
- 폐기물 흐름 분석 보고서.
- 변환 계수 계산.
- 생산 보고서.
- 규제 기관과의 서신 및 현장 검사 보고서, 허가, 허가 수정 및 인증 사본.
- 수수료 결정의 경우: 폐기물 생성자 이름, 사이트 주소 및 폐기물이 수수료 면제 또는 다른 수수료가 적용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명시한 폐기물 생성자의 증빙 서류.
- 명시되지 않고 처리된 목재 폐기물 톤수 보고서.



세금 또는  
수수료 \*

### 감사 목적

다음은 감사관이 확인하려 하는 정보  
유형의 예시입니다.

### 기록(Records)

감사관은 다음 유형의 기록(전자적으로  
보관되는 기록 포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 종합 폐기물 관리료 (Integrated Waste Management Fee)

- 매립지로 반입된 모든 폐기물 톤수를 신고했습니까?
-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반출되었으나 고품 폐기물 매립지에 처리되지 않은 재활용 및 불활성 물질 폐기물의 양을 적절히 제외했습니까?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장부 및 연방 및 주 소득세 신고서를 포함하는 기타 사업 운영 요약 기록.
- 중량 증서, 청구서, 결산표, 고객 서비스 기록 등 장부에 기입된 내용을 증빙하는 원본 서류 및 사업 운영의 결과인 기타 서류.
- CDTFA에 제출한 신고서 사본과 신고서 작성 시 사용된 관련 서류 및 일정.
- 받은 폐기물 보고서.



세금 또는  
수수료 \*

### 감사 목적

다음은 감사관이 확인하려 하는 정보  
유형의 예시입니다.

### 기록(Records)

감사관은 다음 유형의 기록(전자적으로  
보관되는 기록 포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 International Fuel Tax Agreement (국제연료세 협정 IFTA)

- IFTA 기준 총족 차량이 이동한 총 주행거리(마일)를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신고 기간에 IFTA 기준 총족 차량이 사용한 총 연료량(갤런 기준)을 신고했습니까?
- 신고 기간에 IFTA 기준 총족 차량이 사용한 과세 대상 연료량(갤런 기준)을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대량 연료 저장고에서 사용한 연료를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개별 차량 주행거리 보고서, 운전자 일지, 이동 보고서 및/또는 탑승 기록 장치 등의 주행거리 기록.
- 주행거리 기록에는 이동 날짜(출발 및 도착), 이동 출발지 및 목적지, 출발 및 도착 시 주행거리계 판독값, 각 관할구역을 지날 때의 주행거리계 판독값, 이동 경로, 총 주행거리 (mile 또는 km), 관할구역별 주행거리, 차량(단위 및 전체) 번호 등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연료 기록 및 연료 영수증에는 구매한 날짜, 판매자의 이름 및 주소, 구매한 연료량(갤런 기준), 구매한 연료 유형, 갤런당 가격 또는 총 판매액(포함된 경우), 연료가 주입된 차량(단위 및 전체) 번호, 구매자 이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대량 연료 구매 시 세금이 납부되었음을 증빙하는 대량 구매 송장 및 대량 재고 기록. 해당 기록에는 반출 날짜 및 반출량(갤런), 연료 유형, 연료를 넣은 차량(단위 및 전체)의 번호, 보관 시설의 위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CDTFA에 제출한 신고서 및 청구서 사본과 신고서 작성 시 사용된 관련 서류 및 일정.
- 기록은 최소 4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 또는  
수수료 \*

### 감사 목적

다음은 감사관이 확인하려 하는 정보  
유형의 예시입니다.

### 기록(Records)

감사관은 다음 유형의 기록(전자적으로  
보관되는 기록 포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 납산 배터리 수수료(Lead- Acid Battery Fees)

#### 캘리포니아주 배터리세

- 신고서에 배터리세 부과 대상인 교체형 납산 배터리의 정확한 매출을 신고했습니까?
- 딜러/소매업체 환급률을 올바르게 적용했습니까? **참고:** 딜러가 제조업체이기도 한 경우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조사 배터리세

- 신고서에 배터리세 부과 대상인 납산 배터리의 정확한 매출을 신고했습니까?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장부 및 연방 및 주 소득세 신고서를 포함하는 기타 사업 운영 요약 기록.
- 판매 송장, 대변 메모, 구매 주문서 등 장부에 기입된 내용을 증빙하는 원본 서류 및 사업 운영의 결과인 기타 서류.
- 소매 및 도매로 판매된 납산 배터리의 수량이 명시된 판매 보고서 또는 기타 보고서.
- 선하증권 또는 청구된 면세 판매를 증빙하는 기타 서류.
- CDTFA에 제출한 신고서 사본과 신고서 작성 시 사용된 관련 서류 및 일정.
- 재고 기록 및 증빙 서류.



세금 또는  
수수료 \*

### 감사 목적

다음은 감사관이 확인하려 하는 정보  
유형의 예시입니다.

### 기록(Records)

감사관은 다음 유형의 기록(전자적으로  
보관되는 기록 포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 리튬 추출 물품세(Lithium Extraction Excise Tax)

- 추출된 모든 탄산 리튬 등가량(미터 톤)  
을 보고했습니까?
- 추출된 미터톤을 총 수명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정확한 세율 등급으로  
올바르게 보고했습니까?
- 추출된 미터 톤을 올바른 카운티로  
신고했습니까?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장부 및 연방 및 주 소득세 신고서를  
포함하는 기타 사업 운영 요약 기록.
- 판매 송장, 대변 메모, 구매 주문서 등 장부에  
기입된 내용을 증빙하는 원본 서류 및 사업  
운영의 결과인 기타 서류.
- 추출된 양을 보여주는 보존국과 같은 다른  
기관에 제출된 연간 보고서 사본.
- 채광 기록 및 증빙 서류.
- 리튬의 물리적 재고 기록.
- CDTFA에 제출한 신고서 사본과 신고서 작성  
시 사용된 관련 서류 및 일정.



세금 또는  
수수료 \*

### 감사 목적

다음은 감사관이 확인하려 하는 정보  
유형의 예시입니다.

### 기록(Records)

감사관은 다음 유형의 기록(전자적으로  
보관되는 기록 포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 목재 제품 평가세 (Lumber Products Assessment)

- 판매세 및 사용세 허가증은 목재  
계정코드가 올바르게 부여되었습니까?
  - 평가 대상 목재 제품의 모든 매출을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사용세가 부과되는 목재품을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목재 제품 검토 대상이 아닌 매출의  
공제액을 적절히 청구했습니까?
  - 적격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고된 목재  
제품 평가 수익에 대한 상계로 시작  
원가를 적절히 청구했습니까?
- 판매 및 사용세 계정에 필요한 기록(판매 및  
사용세 참조).
  - 목재 판매 및 구매를 보여주는 사업 운영 요약  
기록.
  - 판매 및 구매 송장 등 목재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기입된 내용을 증빙하는 원본 서류.
  - 재판매 증명서, 면세 증명서, 선하증권 또는  
청구된 면세 판매를 증빙하는 기타 서류.
  - CDTFA에 제출한 신고서 사본과 신고서 작성  
시 목재 제품 판매 및 구매를 증빙하는 데  
사용된 관련 서류 및 일정.



세금 또는  
수수료 \*

**감사 목적**

다음은 감사관이 확인하려 하는 정보  
유형의 예시입니다.

**기록(Records)**

감사관은 다음 유형의 기록(전자적으로  
보관되는 기록 포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자동차 연료세**

- 자동차 연료 및 과세 대상 제품의 모든  
랙 반출을 신고했습니까?
- 무면허 공급업체에게 랙 가격보다  
높게 판매한 모든 자동차 연료를  
신고했습니까?
- 쌍방 교환을 신고했습니까?
- 반출입된 총 갤런을 신고했습니까?
- 모든 랙 가격 이하의 구매는 납세 완료  
구매였습니까?
- 세액공제를 올바르게 청구했습니까?
- 직접 사용한 자동차 연료 사용량을  
신고했습니까?

- 랙 반출, 구매, 자동차 연료 매출 및 과세 대상  
제품 관련 회계장부, 총계정원장 계정, 구매  
및 판매 분개장, 구매 및 판매 송장, 선하증권,  
구매 주문서 및 계약서 등 포함.
- 자동차 연료 및 과세 대상 제품의 모든 반출입  
기록.
- 자동차 연료 및 과세 대상 제품의  
실질재고조사 기록.
- 정유 생산 보고서.
- 터미널 운영자 보고서.
- 면세 증명서, 운송 서류 또는 청구된 면세 또는  
세액공제를 증빙하는 모든 서류.
- CDTFA에 제출한 신고서 및 청구서 사본과  
신고서 작성 시 사용된 관련 서류 및 일정.

**천연가스  
추가세  
(Natural Gas  
Surcharge)**

- 판매 또는 소비된 모든 천연가스량(섬  
기준)을 신고했습니까?
- 추가세 면제 품목을 적절히  
신고했습니까?
- 천연가스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지역에 대해 맞는 세율을 적절히  
적용했습니까?
- 대손 조정을 적절히 적용했습니까?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장부 및 연방 및 주 소득세 신고서를  
포함하는 기타 사업 운영 요약 기록.
- 청구서, 결산표, 고객 서비스 기록 등 장부에  
기입된 내용을 증빙하는 원본 서류 및 사업  
운영의 결과인 기타 서류.
- CDTFA에 제출한 신고서 사본과 신고서 작성  
시 사용된 관련 서류 및 일정.

세금 또는 수수료

\*

감사 목적

다음은 감사관이 확인하려 하는 정보 유형의 예시입니다.

기름 유출 대응, 예방 및 관리세 (Oil Spill Response, Prevention, and Administration Fees)

- 주 내부 또는 외부의 해상 터미널 또는 정유소에서 수령한 원유(액화 탄화 수소 및 천연 가솔린 포함) 총량을 신고했습니까?
- 국외에서 해상 터미널로 입고된 석유제품 총량을 신고했습니까?
- 주 내부 또는 외부의 정유소에서 수령한 석유제품 총량을 신고했습니까?
- 주 내부 또는 외부에서 해양 터미널 또는 정유소에서 수령한 총 재생 가능 연료를 신고했습니까?
- 주 외부로부터 받는 시설에서 수령한 총 재생 가능 연료를 신고했습니까?
- 재생 연료 생산 시설에서 출하된 총 재생 연료를 신고했습니까?
- 면세 제품의 영수증이 문서로 적절히 기록되었습니까?
- 모든 해상 터미널, 정유소, 재생 연료 수용 시설 및 재생 연료 생산 시설의 위치를 살펴 보았습니까?
- 신고 시 정확한 수수료율을 적용했습니까?
-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한 배럴을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기록(Records)

감사관은 다음 유형의 기록(전자적으로 보관되는 기록 포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 원유(액화 탄화 수소 및 천연가솔린 포함) 및 해상 터미널(타사 터미널 포함) 또는 정유공장에 입고된 석유제품 관련 회계장부.
- 구매 및 판매 분개장, 총계정원장, 구매 및 판매 송장, 선하증권, 선적 및 하역 기록, 제목이 표시된 계약서.
-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소유 또는 운영되는 모든 해상 터미널 및 정유소 위치와 원유 또는 석유 제품이 수령되는 모든 타사 위치를 명시한 기록.
- 해상 터미널/운송 부두에서 원유 및 기타 석유 제품의 선적 및 하역을 증빙하는 타사의 독립 검사 보고서(예: Saybold 및 Caleb Brett 보고서).
- 가공 시 사용된 원유의 원산지과 수령을 증빙하는 정유소 기록.
- CDTFA에 제출한 신고서 사본과 신고서 작성 시 사용된 관련 서류 및 일정.
- 수수료가 이전에 납부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사본.
- 제품 사양 팸플릿.

세금 또는  
수수료 \*

### 감사 목적

다음은 감사관이 확인하려 하는 정보  
유형의 예시입니다.

### 기록(Records)

감사관은 다음 유형의 기록(전자적으로  
보관되는 기록 포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 선불 이동 전화 서비스 소매업체

- 귀사는 선불 이동 전화 서비스(MTS) 판매자로 제대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 선불 MTS의 모든 매출을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선불 MTS의 모든 소매 거래에 대해 정확한 요금(예: 시 또는 카운티 요금)을 청구했습니까?
- 공제액을 적절히 청구했습니까?
- 판매세 및 사용세 계정에 필요한 기록(판매세 및 사용세 참조) 외의 사업 운영 요약 기록.
- 판매 및 구매 송장 등 선불 MTS 판매와 관련하여 기입된 내용을 증빙하는 원본 서류.
- CDTFA에 제출한 신고서 사본과 선불 MTS 신고서 작성 시 사용된 관련 서류 및 일정.





세금 또는  
수수료 \*

**감사 목적**

다음은 감사관이 확인하려 하는 정보  
유형의 예시입니다.

**기록(Records)**

감사관은 다음 유형의 기록(전자적으로  
보관되는 기록 포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판매세 및  
사용세**

- 개인 유형 자산(상품) 및 과세 대상 노동, 서비스 매출의 모든 총 수입을 신고했습니까?
-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주의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사업상 재판매를 위하여 또는 개인 용도로 구매한 모든 사업상 장비와 용품의 원가를 신고했습니까?
- 공제액을 적절히 청구했습니까?
- 세금을 적절히 책정했습니까?
- 특별 과세 구역의 판매 신고 시 올바른 세율을 사용했습니까?
- 개인 유형 자산의 판매 및 사용 시 세금을 적절하게 적용했습니까?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총계정원장 및 주 및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포함한 사업 운영에 대한 기타 요약 기록을 포함한 회계 장부.
- 판매 및 구매 송장, 구매 주문서, 계약서, 은행 거래 명세서, 금전등록기 테이프 등 장부에 기입된 내용을 증빙하는 원본 서류 및 사업 운영의 결과인 기타 서류.
- 재판매 증명서, 면세 증명서, 선하증권 또는 청구된 면세 판매를 증빙하는 기타 서류.
- CDTFA에 제출한 신고서 사본과 신고서 작성 시 사용된 관련 서류 및 일정.

**산림 벌채세  
(Timber Yield  
Tax)**

- 각 벌채 작업 시 모든 목재 수량을 신고했습니까?
- 올바른 벌채 수확량 값을 사용했습니까?
- 공제액을 적절히 청구했습니까?
- 카운티 및 목재 가치 영역에 수량을 할당했습니까?
- 각 벌채 작업에 대한 크기 코드를 올바르게 결정했습니까?

- 손익계산서, 총계정원장, 미지급금, 외상매출금, 감모 보고서 등 회계장부 및 기타 사업 운영 관련 요약 기록.
- 종량 티켓 및 요약, 송금 자문, 벌목 계획, 정부 벌채 계약, 구매/판매 계약서, 은행 거래 명세서 등의 원본 문서 및 기타 사업 운영 관련 요약 기록.
- CDTFA에 제출한 세금 신고서 사본과 신고서 작성 시 사용된 관련 서류.

세금 또는  
수수료 \*

### 감사 목적

다음은 감사관이 확인하려 하는 정보  
유형의 예시입니다.

### 기록(Records)

감사관은 다음 유형의 기록(전자적으로 보관되는  
기록 포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 지하 저장 탱크 관리세 (Underground Storage Tank Maintenance Fee)

- 지하 저장 탱크 계정이 탱크 소유자에게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습니까?
- 각 현장의 지하 저장 탱크에 있는 석유제품 총량(갤런 기준)을 신고했습니까?
- 지하 저장 탱크에 담긴 석유제품의 총량(갤런 기준)에 연료 등급 에탄올과 바이오디젤(B99.9 이하)을 포함했습니까?
- 신고 시 정확한 수수료율을 적용했습니까?

- 계량 티켓 및 선하증권 등 감사 기간에 구매한 모든 석유제품 관련 구매 송장.
- 구매한 석유제품 수량(갤런 기준)을 증빙하는 구매 분개장.
- 석유제품 재고 기록.
- 펌프 계량기 판독값을 포함한 판매 또는 사용 기록.
- 지하 저장 탱크가 위치한 소유 자산에 대한 재산세 명세서 및/또는 신탁 증서.
- 임대, 탱크 설치 계약서 또는 지하 저장 탱크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기타 서류.
- CDTFA에 제출한 신고서 사본과 신고서 작성 시 사용된 관련 서류 및 일정.



세금 또는  
수수료 \*

### 감사 목적

다음은 감사관이 확인하려 하는 정보  
유형의 예시입니다.

### 기록(Records)

감사관은 다음 유형의 기록(전자적으로 보관되는  
기록 포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 유류 사용세 (Use Fuel Tax)

- 대체 연료 매출을 올바르게  
신고했습니까?
- 직접 사용한 대체 연료를 모두  
포함했습니까?
- 면세 내역을 적절하게 기입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했습니까?
- 신고된 각 유형의 대체 연료에 대한  
적절한 측정 기준(예: 단위 또는 갤런)을  
사용했습니까?

- 모든 대체 연료와 관련된 회계장부,  
총계정원장 계정, 구매 및 판매 분개장, 구매  
및 판매 송장, 선하증권 등 포함.
- CDTFA에 제출한 신고서 사본과 신고서 작성  
시 사용된 관련 서류 및 일정.
- 일률 과세 대상 데칼 부착 차량에 대한 매출  
기록.
- 유류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료를 구매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 재고 기록 및 증빙 서류.



소셜 미디어 팔로우



간담물 76-K | 2023년 6월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

우편 주소: P.O. BOX 942879 • SACRAMENTO, CA 94279-0001